

[서산] 공무원 결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[정정]

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에서는 경상통계조사를 수행할 공무원 결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. 12. 16.

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장

1.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채용구분	채용인원	근무지역	계약방법	채용기간	수당
기간제근로자 (공무원 결원 대체)	2명	서산, 당진, 태안	근로계약	2026. 1. 1. ~ 2026. 1. 31.	1일 73,170원 (표본관리비 및 정액급식비 별도)

※ 채용기간 및 채용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※ 채용단가는 2025년 기준(1일 73,170원, 표본관리비 및 정액급식비 별도)

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경상통계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관할구역(서산시, 당진시, 태안군 일원)의 현장조사 업무수행· 방문 조사 및 비대면 조사 조사표 작성·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시스템 입력· 자료 입력 내검 업무· 기타 조사 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조사지원업무 등

3. 채용방법

□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□ 2차 면접전형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4.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국가데이터처 서산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- 이중계약 및 취업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(이중취업(겸업) 불가)

5. 심사일정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2025. 12. 24. (수) 15:00 이후 개별 통보
- 면접일시: 2025. 12. 29. (월) 10:30부터, 서산사무소 2층 소회의실 예정
 - 면접은 접수번호 순으로 실시, 본인 순서에 미 입실시 불합격 처리 (업무 형편으로 면접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)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12. 29. (월), 17:00 이후 개별 통보
 - ※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12. 16.(화) ~ 2025. 12. 23.(화) 18:00까지
- 접수처

담당부서	주소	담당자	연락처
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	충남 서산시 석림1로 67 (석림동 793-3)	오다솜	전화: 041-660-8101 팩스: 041-660-8144 이메일: dasomi3@korea.kr

- 접수방법: 방문, 우편, 이메일 등(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방문접수는 평일 9시~18시 내에 접수 가능
 -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
 - 접수장소: 서산사무소 2층 경제팀 오다솜 주무관
- ※ 응시원서 등 제출 후, 반드시 유선(041-660-8101)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7. 제출서류

- [필수]응시원서 1부(붙임1 서식 참조)
- [필수]자기소개서(붙임2 서식 참조)
- [필수]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제공동의서(붙임3 서식 참조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4 서식 참조)
- 각종 자격증 등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(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, 한부모가족 세대주 -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) 및 다자녀 보육가구(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및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9조) 및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9조)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<해당자 추가 제출서류>

- 자격증

자격증 (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 유리한 1개만 인정)	점수
- 빅데이터분석기사, 사회조사분석사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	5
- 사회조사분석사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2급, 워드프로세서	1

- 기타(여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)

항 목	내 용	점수
저소득층	- 기초생활수급자 - 차 상 위 계 층 - 1부모가족 세대주	2
다자녀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육)	2
북한이탈주민	- 북한이탈주민	2
장애인	- 장애인등록증소지자	3

- 국가유공자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	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
	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

5점	10점
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	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
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
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	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

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**계약 해지함**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

